# 『KB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』특약

#### 제 1 조 약관의 적용

KB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(이하"이 예금"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출금이자유로운약관.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.

### 제 2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#### 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으로 합니다.

#### 제 4 조 입금제한

- ① 이 예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로 입금자원이 제한되며,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 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0 조 2 항,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2 조(이하 "관련 법"이라 합니다)에서 정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 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합니다. 단,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③ 이 예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사학연금 급여액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대상금액 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 예금과 신고 된 통장)으로 수령해야 합니다.

#### 제 5 조 거래제한

-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
-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
-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
- ④ 이 예금은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⑤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·부적금 신규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할 수 없습니다.
- ⑥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·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·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 4 조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·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① 다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및 이 예금에서 다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으로 전환 할 수 없습니다.

# 제 6 조 적용이율

- ① 기본이율 : 이 통장의 기본이율은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저축예금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우대이율: 이 통장의 결산기 평균잔액 중 1 백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우대이율 연 2.0%를 적용하며, 1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. ※ 단, 우대이율은 기본이율을 포함합니다.

# 제 7 조 세제혜택

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# 제 8 조 수수료면제

- ① 이 예금으로 전월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아래의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합니다.
  - 전자금융(인터넷뱅킹, 폰뱅킹, 모바일뱅킹)의 다른은행 이체수수료
  - KB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의 출금수수료 및 다른은행 이체수수료
  - KB 국민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이 통장에서 연동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
- ② 이 예금의 신규시에는 이체실적에 관계없이 신규일로부터 다음 다음 달 10 일까지 제 1 항의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부 칙(2014.09.22)

이 약관은 2014.09.22 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(2015.01.01)

이 약관은 2015.01.01 부터 시행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